

## 졸업사정 세부지침

제정 2024. 01.  
개정 2024. 03.  
개정 2025. 03.  
개정 2025. 09.  
개정 2026. 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졸업종합시험 및 졸업에 관한 규정」(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졸업사정 대상자의 졸업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료 및 조기졸업의 대상자 선정)** ①본 규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료자 중 졸업사정 대상자 확정일 현재 졸업종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를 졸업사정 대상자로 한다.

②조기졸업 신청자는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대상자를 정하며,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5조제2항에 따라 201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1·2학기를 7개 학기 이상 및 여름·겨울학기를 5개 학기 이상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졸업사정 대상자로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조리학부 Lyfe조리전공에 한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1·2학기 기준 이수학기수가 8학기 미만이고, 8학기차의 수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졸업사정 대상에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조(수업연한)** ①2019학년도 이후 입학생(수업연한 4년 적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신입학 : 1·2학기를 8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2. 2학년 편입학 : 1·2학기를 6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3. 3학년 편입학 : 1·2학기를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4. 4학년 편입학 : 1·2학기를 2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자

②2018학년도 이전 입학생(수업연한 3.5년 적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만족하여야 한다.

1. 신입학 : 1·2학기 7학기 이상 및 여름·겨울학기 6학기 이상 이수자 또는 1·2학기 8학기 이상 이수자
2. 2학년 편입학 : 1·2학기 5학기 이상 및 여름·겨울학기 5학기 이상 이수자
3. 3학년 편입학 : 1·2학기 3학기 이상 및 여름·겨울학기 3학기 이상 이수자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수강신청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3학년 편입학 외국인 유학생은 1·2학기 4학기 이상 이수한 자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수업연한 별도 적용 대상자로 한다.

1. 복수학위 이수자 : 수업연한 4년 적용(1·2학기 8학기 이상 이수자)
2. 학군단(ROTC) 선발자 : 수업연한 4년 적용(1·2학기 8학기 이상 이수자)

**제4조(다전공 이수)** 다전공 사정은 해당 과정을 운영하는 주관학과(전공)에서 이수여부를 이수학점으로 심사하고 사정결과를 교무처 및 학생 소속학과로 통보해야 한다.

**제5조(교양 졸업기준)** ①본 규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2020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교양 영역 이수학점 기준인 [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2019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및 모든 편입학생에 대해서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교양 졸업기준을 신규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우송교양대학장은 교양교육운영위

원회를 통해 교양 졸업기준(안)을 수립하고 교무처로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World Student 인증 기준)** ①본 규정 제8조의2 및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2009학년도 이후 신입학생은 World Student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의 합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2008학년도 이전 신입학생 및 모든 편입생에 대해서는 본조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졸업을 위한 마지막 학기 또는 수료 이후 신청일 기준 취업 중인 경우(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증빙 필수)에는 World Student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④복수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복수학위과정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학과(전공) 졸업기준)** ①본 규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모든 신입학생은 [별첨 1]에 의한 학과(전공) 졸업기준인 전공 영역 이수학점 기준 및 졸업종합시험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졸업을 위한 마지막 학기 또는 수료 이후 신청일 기준 취업 중인 경우(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가입증명서 증빙 필수) 또는 학생군사교육단 임관 예정인 경우에는 학과(전공)의 졸업종합시험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전공 영역 이수학점 기준은 별도로 충족하여야 한다.

③복수전공(융합전공 또는 연계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 포함)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복수전공에서의 학과(전공) 졸업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④학과(전공) 졸업기준을 신규 수립하거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과장은 소속학과 구성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학과(전공) 졸업기준(안)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대학의 발전전략 또는 특성화 방향 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총장은 학과(전공) 졸업기준을 별도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⑥졸업종합시험을 합격하지 못한 학생 중 학과(전공)에서 추가합격 인정자가 있을 경우 졸업종합시험 결과보고 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이를 졸업사정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학위취득유예자 졸업사정)** 학사학위취득유예자의 경우 유예기간 종료 후 재사정하지 않고 졸업자로 처리한다.

**제9조(추가 졸업사정)** ①매 학년도 전기 또는 후기 졸업사정 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추가 졸업사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 단위 추가 졸업사정 결과를 첨부하여 학장의 승인을 받아 추가 졸업사정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외대학과의 협약에 따라 수학한 학생의 성적처리가 양교간의 학사일정 또는 학제의 불일치로 인해 지연된 경우
2. 해외대학 복수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의 해외대학 학위증 발급이 지연된 경우
3. 학생의 의사와 다르게 행정 착오 및 전산처리 오류 등의 사유로 졸업사정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교무처는 추가 졸업사정 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③원활한 학사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시행된 추가 졸업사정 및 처리결과의 확정은 매 학년도 3월말 또는 9월말을 초과할 수 없다.

④추가 졸업사정의 결과는 해당 졸업학년도 전기 또는 후기 졸업일을 적용한다.

#### 부 칙(2024. 01.)

**제1조(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2020학년도 및 2021학년도에 신입학한 학생들의 교양영역별 이수 사정 시 소속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의사소통능력’ 및 ‘글로벌마인드’ 영역의 이수학점을 영역별로 사정하지 않고 합산하여 사정할 수 있다.

부 칙(2024. 03.)

제1조(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23학년도 전기(2024년 2월)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제2조(이수기준 적용의 특례) 휴학 후 복학한 경우를 포함하여 재학 중 적용받는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을 모두 이수한 경우 교양필수(영역별 필수 포함) 및 전공필수를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25. 03.)

제1조(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09.)

제1조(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6. 01.)

제1조(시행일) 이 세부지침은 2025학년도 후기(2026년 8월) 졸업사정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교양 영역 이수학점 기준

(최근 개정 2025.03.)

영역 구분	신입학 학년도		2025학년도 이후	2020~2024학년도
	영역			
1	도덕성 및 인성		2	2
2	의사소통능력		2	16
3	글로벌마인드		8	
4	분석적 과학적 사고력		6	
5	사회 이해 및 관계능력		2	-
6	인문적 심미적 소양			
7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합계			20	18

- ※ 유아교육과는 1영역부터 4영역까지의 기준만 적용하여 총 18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교직 이수자의 교양 영역 이수학점 기준은 유아교육과의 기준을 따르며, 전공학점은 소속 학과의 전공 이수학점 기준을 따른다. 다만, 교직 이수를 중도 포기할 경우 교양 영역 이수학점 기준도 소속 학과의 기준을 따른다.
- ※ 언어치료·청각재활학과의 2022학년도 신입생에 대해서는 2영역부터 4영역까지 합산을 14학점으로 한다. (1영역 포함 총 16학점)
- ※ 글로벌 학과(AIEP 교육과정 적용)의 경우 2영역과 3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합하여 10학점으로 한다.
- ※ 4영역(분석적 과학적 사고력)에서는 SW교양 교과목으로 반드시 6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 ※ ‘중점교양(SW기초·심화영역)’ 으로 이수한 학점은 4영역(분석적 과학적 사고력)으로 합산한다.

[별표 2] World Student 인증제 합격 및 대체인정 기준표

(최근 개정 2025.03.)

■ World Student 인증제 합격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합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익 550점(단, 간호학과 650점 / 철도경영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외식조리학부 외식조리전공 600점)</li> <li>• JLPT 2급</li> <li>• HSK 7급</li> <li>• 외국인유학생 : KLPT 또는 TOPIK 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은 TOPIK 4급 또는 &lt;표 1&gt;의 WS 인증 세부기준을 적용함</li> </ul> </li> <li>• 기타 별도 과정 이수자(대체인정)</li> </ul>	세 부 사 항 은 <표 1> 참조
대체 인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EP(Special TOEIC Equivalency Program)과정 3과목 이상 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EEC과정 교차 이수 시, STEP과정 1과목 이상 이수</li> </ul> </li> <li>• 교양외국어(영어(GEEC), 중국어, 일본어) 별도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 (C0 이상)</li> <li>• 교양 영어 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성적 C+이상) 시 WS인증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학년도에 한하여 한시적 적용</li> </ul> </li> <li>• 외국인유학생: 한국어교육원 특별과정 2회 이상 이수(성적 C0이상)(단,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은 영어(GEEC) 또는 STEP 과정 이수 가능)</li> <li>• 1개 과정 이상 WEFA 프로그램 수료</li> <li>• 해외연수 및 취업준비를 위한 영어 특별교육과정(GAEP 등) 2과목 이상 이수(성적 C0 이상)</li> <li>• 학생군사교육단 영어 프로그램(CLEP 등)을 3개 과정 이상 수료</li> <li>• 졸업학기 또는 수료 이후 현재 취업 중인 경우(건강보험가입확인서 필수)</li> </ul>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4학년도 이전 신입생은 종전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음</li> </ul>	

<표 1> World Student 인증 세부기준

번호	시험유형	인증점수 기준			비고
		일반학과	간호학과	호텔관광경영학과, 철도경영학과, 외식조리전공	
1	TOEIC	550점 이상	650점 이상	600점 이상	
2	TOEFL-IBT	63점 이상	70점 이상	65점 이상	
3	TOEIC-S	100점 이상	110점 이상	110점 이상	
4	TEPS	241점 이상	280점 이상	258점 이상	
5	TEPS-S	38점 이상	46점 이상	42점 이상	
6	OPIc	IM1 이상	IM1 이상	IM1 이상	
7	JLPT	N3급 이상	N3급 이상	N3급 이상	
8	JPT	529점 이상	529점 이상	529점 이상	
9	HSK	5급 이상	5급 이상	5급 이상	
10	IELTS	5.5점 이상	6.0점 이상	5.5점 이상	
11	Duolingo	80점 이상	90점 이상	85점 이상	
12	J.TEST	500점 이상	500점 이상	500점 이상	

※ 단, 교육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학과의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모국어 관련 언어능력시험은 제외함